

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80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3. 8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안산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산환경재단의 사업내용 추가 및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등 관련 조례 정비

주요내용

- 안산환경재단 사업(안 제4조)
 - 환경·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(추가)
 -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(추가)
- 공유재산 대부 등(안 제15조)
 -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(변경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2. 1. 18. ~ 2022. 2. 7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호 중 “필요한 사항 등” 을 “필요한 사항” 으로 하고,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환경·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
- 9.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

제15조 중 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” 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환경정책과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최 미 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후변화대응팀장 최 경 화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현 경 (행정 2924)

< 붙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7.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사업)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(등 삭제)</p> <p><u>8. 환경·생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</u></p> <p><u>9.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</u></p>
<p>제15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----- -----</p> <p><u>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-----.</u></p>